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621 발의연월일: 2025. 9. 3.

발 의 자: 강대식 • 박준태 • 김상훈

임종득 • 이인선 • 고동진

최수진 • 박덕흠 • 백종헌

김장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군조직법」에서는 군인 외에 군무원을 둔다는 조항과 군무원의 자격, 임명, 복무 그 밖에 신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규정만 있음.

우리나라는 저출산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역자원 급감에 따른 대책으로 군무원 정원을 확대하여 비전투분야의 민간인력 대체와 국방 인력구조 개선의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있어 군무원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군무원 정의 및 임무와 역할에 대한 명확한 조항을 신설하여 군무원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군무원의 사기 진작과 복무 활성화를 도 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군무원의 정의) ① 이 법에서 "군무원"이란 「국군조직법」 제16조에 따른 국군의 구성원으로서 전·평시 부여된 임무와 업무를 수행하는 특정직공무원을 말한다.

② 전투임무를 부여할 수 있는 직군 및 직렬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2조의2(군무원의 정의) ① 이
	법에서 "군무원"이란 「국군조
	직법」 제16조에 따른 국군의
	구성원으로서 전·평시 부여된
	임무와 업무를 수행하는 특정
	직공무원을 말한다.
	② 전투임무를 부여할 수 있는
	직군 및 직렬은 대통령령으로
	<u>정한다.</u>